「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발의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발 의 자**: 김정도 의원
3. **찬 성 자**: 김영태·김재우·김지식·박윤경·유승헌·이탕모·장진호 의원(7인)
4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5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2. 제안이유

○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나.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～제6조)
다. 비밀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라.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～제9조)
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바.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사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아.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(안 별지 제1호～제3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,
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

나. 기　　타: 조례안 예고(2026. 10. 7. ~ 10. 12.) 결과 의견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발굴된 외국인 아동에 대한 확인증 발급과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보호·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읍·면·동, 보육·교육기관 및 외국인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, 외국인 아동의 경우 상담·통역과 확인증 발급 안내를 통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.

- 또한 발굴 이후에도 보육·교육·의료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를 지속하여야 하며, 아동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